

육아지원기관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지출 결정요인 분석

김진미*

An Analysi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on Expens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Kim, Jin Mi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 주제어 : 육아지원기관 특별활동, 보육비용, 특별활동 비용

* 제 1저자(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argos83@hanmir.com)

I. 서론

정부는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초기 교육경험의 중요성에서 비롯하여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하였다. 5세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 특히 취학 전 만 5세 유아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었다(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이미 1997년에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바 있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은 취학 직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생애 초기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Barnett & Belfield, 2006; Borman & Hewes, 2002; Carneiro, Cunha, & Heckman, 2003; Cunha & Heckman, 2006; Grunewald & Rolnick, 2007; Heckman, & Masterov, 2007)에 기초하여 유아교육·보육을 국가의 핵심교육정책 대상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육아지원시설 이용과 이에 따른 부모 부담비용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은 소득계층별,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연승, 2011). 이러한 문제점에서 비롯되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 전반에 보육료를 지원하려는 국가의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보육사업 예산은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2004년 4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1조원을 넘어서(이혜원, 2013), 2014년에는 41,313억원에서 27.7% 증가한 5조273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영유아 보육정책 중 보육료 지원이 전체 재정 중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육료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체감하는 보육료 지출부담은 낮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이 감소되었지만 특별활동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가 가구의 부담증가 및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서수경, 2012; 서울신문, 2013.05.10; 이혜원, 2013).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원에서는 미술, 체육, 영어, 수학 등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정규 교육 및 어린이집 외에 이뤄지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실태 및 인식, 문제점, 영향요인 등 다양한 연구(김보림, 엄정애, 2007; 김지경, 2003, 2004; 권정운, 2007; 박수진, 2001;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서금택, 2004; 서문희, 양미선, 2013;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a;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이명순, 2007; 이미화, 김은영, 2007; 차성현, 김순남, 김지경, 박선옥, 전경원, 민병철,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황혜신, 2003))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학원 등 다양한 사교육 형태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행해지는 특별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후의 특별활동이 아닌 오전 정규 수업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은 사교육 활동으로 분류되며(강이주, 2007; 이기숙 등, 2002; 차성현 등, 2010),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필요경비로 별도로 징수되고 있다.

점차 특별활동 이용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활동 비용지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별활동의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김은영 등, 2009; 서문희 등, 2009, 2012a; 이기숙 등, 2002; 이미화, 김은영, 2007; 이미화 등, 2012;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2012) 및 사교육 지출 관련 요인분석(강이주, 2007; 김지경, 2003;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 2012b; 송정, 양정선, 차성현, 정연주, 2011; 이경선, 김주후, 2010; 차성현 등, 2010)은 많이 수행되어왔지만 주로 특별활동을 사교육의 범주로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지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다.

2014년 보육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4조1313억원보다 27.7% 상승한 것이다. 증액된 3,906억원 중 상당부분(3,472억원)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대비 추가로 5%p 인상함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보육비용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 서수경(2012)은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필요경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활동비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서문희 등(2009)도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 비용이 보육료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와 시설장들의 원아 확보 및 운영상의 이유로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계속 실시될 것이므로 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구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월별 특별활동비가 서울 강남의 경우 최고 210천원, 최저 인천 30천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으며(동아일보, 2013.3.18),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경비를 매년 인상해 무상보육 효과를 상쇄시키는(이데일리, 2013.10.14.)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처럼, 기관 내 특별활동 비용이 가구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특별활동을 정규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 학원이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대상으로 현황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하며, 아동의 초기 교육경험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계층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전국수준에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활동의 이용 현황과 지출비용의 관련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 및 가구 특성,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 변인이 특별활동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특별활동 근거 및 문제점

서문희 등(2009)은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보육과정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되는 특별 교과 중심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미

화, 김은영(2007)은 특별활동을 광의적 개념으로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으며, 서문희 등(2012b)은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에서 강사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가 주로 다니는(3일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기타학원 포함)에서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2013)의 보육사업안내에서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등을 포함한다.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정의한다. 시·도 지사는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세부 내역별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주기를 정하고, 이 수납 주기별로 수납한도액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44조와 제45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서수경, 2012). 특별활동의 운영근거는 제29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9조(보육과정)
 -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등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8.13>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료: 서수경(2012). p.9, 재구성

한편,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보육료지원정책이 가구의 비용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해원(2013)은 2008년과 2010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2009년에 시행된 보육료 지원정책¹⁾의 효과

를 통해 보육료 지원이 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켰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들의 시설이용 전환 및 2009년 당시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 외에 정부 지원을 받는 다하더라도 시설이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004년과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4년 대비 2009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에 따른 부모 부담은 2배로 증가하였다(서문희 등, 2012b)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이윤진 등(2012)의 조사에서도 5세 누리과정 시행 이후 기관의 지출이 월평균 약 20만원에서 시행 후 11만원으로 약 9만원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행 전 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월평균 비용이 41천원에서 시행 후 45천원으로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도한 비용 지출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 아동의 발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활동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금지, 오후시간대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유치원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해 특별활동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종일제에서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시작하였다(송정, 2011). 보건복지부(2011)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시행은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보급 활성화, 영유아의 특별활동 선택권 보장, 오후 일과 시간대 운영, 24개월 미만의 영아 특별활동 금지, 월별 총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 설정,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등 행정적 규제를 실시한 것이다(아시아경제, 2013.05.07.). 이와 같은 특별활동 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내용 및 비용 산정과정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 또한 서수경(2012)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나,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특별활동비 관련내용의 정보 및 안내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자치구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도 명확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 영향요인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 이용 요인에 관한 분석은 많지만 특별활동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제약되어 있어 사교육 비용 지출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 이용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 연령, 아동 성별, 모 취업, 모의 학력, 가구 월소득, 지역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1) 보육료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차등지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하위 70%이하 차등지원으로 변화됨.

먼저 연령의 경우, 아동의 연령은 사교육 이용개수 및 비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김보림, 엄정애, 2007; 서문희 등, 2012b; 이경선, 김주후, 2010; 이기숙 등, 2002; 차성현 등, 2010). 성별의 경우,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김지경(2004)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 이기숙 등(2002)은 여아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다.

모 학력은 조기 사교육의 이용 개수와 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많은 개수의 사교육을 시키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연구결과(박지연 등, 2005)와, 대학원 졸 이상의 모에 비해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가진 모가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킨다는(김보림, 엄정애, 2007)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구의 경제학적 수준을 보여주는 월평균가구소득은 사교육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림, 엄정애, 2007; 박수진, 2001; 이경선, 김주후, 2010). 한편, 주택소유여부와 가구형태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적 환경 및 사회적 지원특성을 잘 보여주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모 취업은 사교육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사교육 이용개수가 많으며(이기숙 등, 2002),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서문희 등, 2012b). 반면, 모 취업여부가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박지연 등, 2005)와 미취업일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연구(서문희, 양미선, 2013)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수도권 여부가 사교육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정원, 2009)가 있는데, 복지패널(2007)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과 수도권, 시,군/도농 복합군으로 소재지를 구분하여 지역에 따른 사교육 이용을 분석한 이경선, 김주후(2010)의 연구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는데, 이숙현, 백진아(2004)의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이용하는 사교육 개수와 비용지출이 많았다. 또한 이미화 등(2012), 서문희 등(2012a, 2012b)의 연구에서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가 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특별활동 및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아동특성, 가구특성,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 등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 데이터를 사용하였다²⁾. 한국아동패널은 아동 특성, 모 특성, 가족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등 아동을 둘러싼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는 층화다단

2) 한편 가구특성으로 투입된 모학력, 가구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등은 3차년도의 데이터를 매칭하여 사용함.

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4차년도 표본수는 1,754가구로서 표본은 전년도 대비 유지율 97.3%이다. 4차년도에서는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주 3일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기타 학원 포함)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별활동프로그램은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관 내 특별활동에 대해 이용 프로그램 수, 월평균 비용 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의 종류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국어), 컴퓨터, 교구 이용프로그램, 한자, 영어, 기타외국어, 통합, 기타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분석에는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방식으로 제거하여 991 가구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변인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특기활동 지출비용	육아지원기관 특별활동 이용에 지출되는 총 비용
아동 특성	아동 성별	남=1, 여=0
	아동 월령(개월)	연속변수
	모 학력(3차년도)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학교졸, 4=대학원 이상
독립 변수	가구특성	모 취업
	주택소유여부	취업=1, 미취업=0
	가구형태(3차년도)	자가=1, 비자가=0
육아지원기관 유형	월평균가구소득_로그 (3차년도)	1=부부+자녀, 2=조부모+부부+자녀, 3=기타
	이용 기관 유형	월평균가구소득 로그 취한 값
지역	거주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학원 ³⁾ 등을 더미변수 처리
		서울, 광역시, 도를 더미변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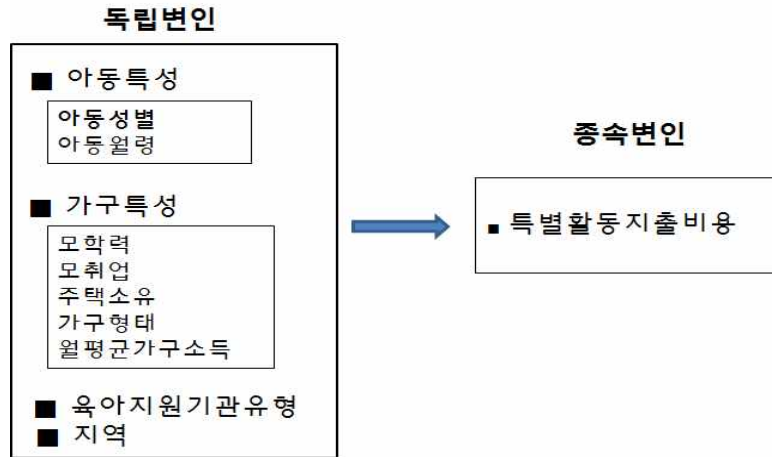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정규프로그램 등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의 이용현황(프로그램 종류와 수, 월평균비용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변인, 가구 변인, 기관의 유형, 지역변인 등이 특별활동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산분석과 각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변인은 각 특성별로 투입한 후 단계별로 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

3) 이용 육아지원기관 유형은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등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기관 유형을 기타 학원으로 분류함.

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의 <표 2>에서 나타난 변인의 기술통계 값을 보면, 아동성별은 남아가 52.1%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아동월령은 평균 38.26개월이었다. 모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모 취업의 경우 취업(45.8%)보다 미취업인 경우가 54.2%로 조금 더 높았다. 주택소유를 보면 비자가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형태가 89.6%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은 평균 약 386만원이며, 육아지원기관 유형을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기관에 비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도(52.5%), 광역시(33.5%), 서울(14.0%)순으로 나타났다⁴⁾.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

변인명	사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아동성별	991	남	516	52.1
		여	475	47.9
아동월령	991		38.26(1.46)	
모 학력	899	고졸이하	288	32
		전문대졸	233	25.9
		대학교졸	346	38.5
		대학원이상	32	3.6

4) 한편,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42.8%), 중소도시(35.8%), 읍면지역(21.4%) 순으로 분포가 나타남.

모 취업	986	미취업	534	54.2
		취업	452	45.8
주택소유여부	991	비자가	510	51.5
		자가	481	48.5
		부부+자녀	862	89.6
가구형태	962	조부모+부부+자녀	75	7.8
		기타	25	2.6
월평균가구소득 _로그5)	935		5.75(.55)	
육아지원기관	991	어린이집	958	96.7
		유치원	14	1.4
		기타 학원등	19	1.9
		서울	139	14.0
지역	991	광역시	332	33.5
		도	520	52.5

2. 특별활동 현황

1) 기관 내 특별활동 현황

이용하는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991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구(455)보다 많았다. 이는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0-5세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서문희 등(2012a)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특별활동을 1개 이상 하는 아동이 65.5%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의 34.5%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표 3>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

	N	%
특별활동 없음	455	31.5
특별활동 있음	991	68.5
전체	1,446	100

조사에서는 기관 내 특별활동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기재하였는데, 체육(3), 수학(2), 교구 이용프로그램(2), 영어(3), 통합(5), 기타(2)를 제외하고 모두 종류에 따라 1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수를 2개 이상으로 기재한 경우, 각 사례수⁶⁾가 낮게 나타나, 체육등 한 가지 유형의 특별활동에 다양한 종류별로 참여한 경우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활동 유형에 따른 참여율을 보면, <표 4>와 같다. 영어(75.3%), 체육(56.5%), 음악

5) 로그취하기전 값은 386.48만원(434.36)으로 나타났으며, 편포를 살펴본 결과, 왜도 7.28, 첨도 66.35로 나타나 로그 값을 취함.

6) 체육(3)-2개 이상(6명), 수학(2)-1명, 교구(2)-8명, 영어(3)-2개 이상(3명), 통합(5)-2개 이상(3명), 기타(2)-6명

(48.9%), 교구(32.9%)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가 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차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월령이 35~42개월(평균 만 3.18세)인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참여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0-5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문희 등(2012a)의 연구에서 영어가 70.5%로 가장 높고 체육 59.3%, 미술 44.7%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반면 이윤진 등(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어(영어)로서 40.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 35.6%, 음악 29.2%, 체육 26.6%, 한글 23.3%순이었다. 만 5세를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연령이 낮은 것에 비해 영어의 참여비율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편 미술(31.5%), 음악(48.9%), 체육(56.5%)등 예체능 활동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유아의 교육과정이 주로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활동 유형에 따른 비용을 비교했을 때 미술의 경우 최대 300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비용은 약 3천원-29천원의 분포를 보였다. 평균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통합프로그램으로 약 29천원이었다.

<표 4> 특별활동 유형별 참여율 및 지출비용

유형	참여율		지출비용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미술	.3158(.46)	.00	300000.00	16399.36(21675.01)
음악	.4894(.50)	.00	200000.00	16231.95(15294.63)
체육	.5651(.49)	.00	100000.00	14972.32(12764.64)
과학	.0464(.21)	.00	50000.00	12750.00(12166.78)
수학	.0646(.24)	.00	78000.00	13250.00(15124.08)
국어	.1211(.32)	.00	100000.00	15529.16(14533.83)
컴퓨터	.0030(.05)	.00	10000.00	3333.33(5773.50)
교구프로그램	.3290(.47)	.00	200000.00	17326.68(18010.97)
한자	.0121(.10)	.00	30000.00	8333.33(12673.04)
영어	.7538(.43)	.00	100000.00	19783.80(15303.16)
기타 외국어	.0111(.10)	.00	30000.00	13181.81(11016.51)
통합	.0848(.27)	.00	250000.00	29053.57(34456.01)
기타	.1140(.31)	.00	160000.00	22389.38(18676.49)

한편, 특별활동 중복 이용의 경우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5>),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중복 이용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특별활동 이용에 지출되는 총비용을 살펴본 결과 최대 370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약 50천원이었다. 이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문희 등(2012a)의 연구에서 나타난 66.7천원보다는 낮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미화 등(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52천원과 유사하다.

<표 5> 전체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총 지출비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이용개수(중복)	991	1.00	12.00	2.91	1.43
총 지출 비용	991	.00	370000.00	50797.67	41133.65

2) 특별활동 이용현황 평균비교

육아지원기관 유형별에 따른 평균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어린이집이 약 50천원, 유치원이 45천원, 영어학원 및 놀이학교,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의 특별활동 비용은 91천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의 평균 특별활동 지출비용보다 높았다. 이러한 기관유형간의 비용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출비용과 학원 등 기타 기관과의 평균 지출비용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월평균 55.9천원, 유치원 65.6천원으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인 유아연령이 약 만 3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점은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추가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육아지원기관 유형별 특별활동 이용비용

육아지원기관유형	평균	N	표준편차
어린이집	50084.02	958	39086.77
유치원	45000.00	14	48516.45
학원등 기타	91052.63	19	91478.27
합계	50797.67	991	41133.65

$F=9.544^{***}$

선행연구(이미화, 김은영, 2007; 김은영 등, 2009; 이미화 등, 2012; 서문희 등, 2012a; 차성현 등, 2010)들은 대도시로 갈수록 특별활동 이용개수와 지출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 지역에 따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평균 5.22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 3.62개, 충청북도 3.25개, 경상남도 2.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전라북도로 평균 1.87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F=14.012$ 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지역별에 따른 지출비용을 보면, 서울이 약 71.7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가 67.5천원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특별활동 이용개수가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의 지출비용이 약 15.7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활동 이용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프로그램당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7> 지역별(16개 시/도)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 평균비교

패널 거주 지역 16개 시/도 구분	N	이용개수	지출비용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서울특별시	139	2.77(1.62)	71791.36(42562.39)
부산광역시	60	2.91(1.19)	67500.00(52236.91)
대구광역시	88	2.51(.94)	53965.90(32721.90)
인천광역시	36	2.80(.88)	16388.88(28800.07)
광주광역시	44	5.22(1.59)	15772.72(25956.90)
대전광역시	46	2.65(.94)	62565.21(20885.56)
울산광역시	58	3.62(1.72)	58913.79(41879.22)
경기도	226	2.86(1.24)	45984.51(43837.28)
강원도	13	2.84(1.40)	32615.38(16997.73)
충청북도	32	3.25(1.70)	46218.75(34319.87)
충청남도	71	2.84(1.05)	54309.85(23518.13)
경상북도	57	2.49(1.05)	38859.64(38757.22)
경상남도	64	2.92(1.53)	41859.37(25552.22)
전라북도	8	1.87(.83)	46875.00(34942.55)
전라남도	49	2.12(1.09)	52306.12(53659.49)
전체	991	2.91(1.43)	50797.67(41133.65)

$F=14.012^{***}$

한편 <표 8>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특별활동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도시로 갈수록 특별활동 지출비용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평균의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평균비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역규모별 특별활동 지출비용 평균비교

지역규모	평균	N	표준편차
대도시	55787.73	424	42928.35
중소도시	47240.84	355	43427.50
읍면지역	46773.58	212	31504.69
합계	50797.67	991	41133.65

$F=5.511^{**}$

3. 특별활동 지출비용 영향 요인 분석

각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유의한 요인 및 모형의 설명량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이나 월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특별활동 이용 및 지출비용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대조적인데, 이는 전술했듯이 분석대상 조사시점의 아동의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구특성 변인 중 모 학력은 전문대졸과 대졸인 경우 고졸이하에 비해 특별활동 비

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모 미취업은 특별활동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모일수록 더 많은 특별활동 비용을 지출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변인을 투입했을 때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 유형변인을 투입했을 때 준거변인인 기타 학원에 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지출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등을 이용할 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특별활동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변인을 투입했을 때 도에 비해 서울과 광역시의 지출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투입했을 때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의 경우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 도를 준거변수로 한 거주 지역(서울, 광역시, 도) 변인을 투입했을 때, 이러한 지역규모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이는 거주 지역이 지역규모의 효과를 매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만 투입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9> 특별활동 비용 결정요인

변수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S.E)	Exp(B)	회귀계수 (S.E)	Exp(B)	회귀계수 (S.E)	Exp(B)	회귀계수 (S.E)	Exp(B)	
아동특성	아동성별	-3820.450 (2726.801)	-.048	-3576.386 (2721.788)	-.045	-4103.543 (2702.517)	-.051	-3962.780 (2661.612)	-.049
	아동월령	77.947 (935.993)	.003	388.744 (935.789)	.014	158.575 (928.687)	.006	1213.256 (935.847)	.044
모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 졸			5426.245 (3633.092)	.059	4975.112 (3599.459)	.054	5180.069 (3546.531)	.057
	대학교 졸			8447.608* (3367.841)	.102	7256.793* (3344.726)	.088	6101.816+ (3300.955)	.074
	대학원 졸			-92.350 (7934.147)	.000	-3910.933 (7904.204)	-.018	-6801.507 (7809.958)	-.031
	대학원 이상								
가구특성	모취업			-8681.661** (2855.591)	-.108	-7668.048** (2837.075)	-.095	-7080.819* (2797.808)	-.088
	주택소유여부			-2785.050 (2756.470)	-.035	-2801.347 (2728.717)	-.035	-996.235 (2719.513)	-.012
가구 형태 (부부 +자녀)	조부모 +부부 +자녀			-4172.443 (5269.972)	-.027	-5014.072 (5222.622)	-.032	-4883.729 (5143.697)	-.031

	조부모	1655.114	.006	1995.640	.007	1996.689	.007
	등 기타	(9323.268)		(9232.590)		(9092.979)	
	월평균가구소득	5872.885*	.080	5420.981*	.074	3981.048	.054
		(2694.846)		(2671.552)		(2652.646)	
육아지원	어린이집			-41851.953***	-.196	-39730.276***	-.186
	기관			(9561.068)		(9434.198)	
(기타학원)	유치원			-47951.775***	-.150	-47261.466***	-.148
				(14188.877)		(13989.970)	
	서울					22425.281***	.191
지역(도)						(4187.287)	
	광역시					3889.508	.045
						(2962.508)	
	상수	48745.025		3874.097		56927.715	
		(35887.759)		(39320.397)		(40853.606)	
	F값	.991		2.286*		5.449***	
	R2	.002		.026		.048	
	(수정된 R2)	(.000)		(.015)		(.03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이용 분석 및 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용현황 및 지출비용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로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31.5%보다 약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유형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영어(75.3%)이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둘째,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대졸),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를 보면, 거주지역(서울), 육아지원기관, 모 취업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선행연구는 교육 및 보육료와 사교육 지출비용에 월평균가구소득이나 모 취업 등의 가구변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보림, 엄정애, 2007; 서문희 등, 2012b; 이경선, 김주후, 2010), 본 연구에서는 지역변인이 전체 설명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특별활동 지출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월별 평균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경향신문, 2013.7.31.), 지역별로 특별활동 비용의 편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특별활동 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하며, 가구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됨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수경, 2012; 경향신문, 2013.7.31.) 이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기타 학원의 경우 특별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기타 학원 등의 기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평균이 약 만 3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약 7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은 보인 것은 영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어린 연령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촉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 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며, 지역이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무엇보다 특별활동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활동비 적정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활동비의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서수경(2012)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상한액을 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구성 비율을 준수하고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상한액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서문희, 이혜민(2013)은 필요경비 상한선 설정이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연령별 이용가능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당 주당 빈도 및 교육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특별활동 과목·대상연령·비용·시간·업체 등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시 가산점 및 감점 부여 등을 통해 평가 및 관리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육아지원기관 유형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나, 기타 학원의 경우, 비용이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 보육 및 교육기관 외에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타 학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적절한 상한선과 규제기준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현황은 지역별, 가구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별활동도 초기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서문희 등(2012b)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활동 강사를 파견하거나 저소득층 아동비용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차성현 등(2010)은 특별활동 교육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일제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허용이 사교육비 경감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종일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아당 일정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4차년도 패널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이 만 3.18세인 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영아(0-2) 및 다른 연령의 유아의 특별활동 실태 및 비용의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분석결과,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육아지원기관 유형의 특별활동 실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현재 한국아동패널이 4차년도(2011)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데이터의 제약으로 누리과정 시행이후의 특별활동 비용 지출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출비용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분석 및 종단데이터를 통해 연령별 변화에 따른 이용현황의 차이나 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누리과정 시행이후의 특별활동 비용 지출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체감정도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지적된 특별활동의 현황 및 지출요인을 전국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지역별 격차 및 지출비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리감독이 요구됨을 확인한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이주 (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 16(2), 315-331.
- 경향신문 (2013.7.31).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원복 구입비 등 정부 지원 연간 무상 보육료와 맞먹는다.
- 권정윤 (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김보림, 엄정애 (2007). 유아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조혜주, 김경미 (2009).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경 (2003). 자녀연령별 사교육 이용유형과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여성연구**, 67(2), 235-264.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 38(12), 189-206.

- 동아일보 (2013.3.18). 서울 송파구 24만원 vs 충북 2만원.
- 박수진 (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연, 이숙현, 백진아 (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57-179.
-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3.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시행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금택 (2004). 유아 사교육의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문희, 양미선 (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89-207.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해민 (2012a).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 (2012b).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이해민 (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최진, 이정림, 최혜선, 조성연, 권영인 (2009).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수경 (2012).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필요경비 가이드라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신문 (2013.05.10.).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의 절반 육박.
- 송정 (2011).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현황 및 쟁점, 발전방향. 이슈브리프 31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송정, 양정선, 차성현, 정연주 (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아시아경제 (2013.05.07). 복지부, 6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합동 점검.
-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경선, 김주후 (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테일리 (2013.10.14). [국감]어린이집 추가경비 3년세 39.8% 인상.
- 이명순 (2007). 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4), 157-181.
- 이미화, 김은영 (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 서문희,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권미경, 양미선, 손창균, 김경미 (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숙현, 백진아 (2004). 조기 사교육과 어머니의 역할-가족주의 가치관과 계층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201-235.
- 이연승 (2011). 도시화에 따른 유아교육의 요구와 대응과제. 2011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도시화, 지역화, 국제화 시대의 교육.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영유아보육학**, 59(1), 29-55.
- 이혜원 (2013).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4, 8-26.
- 차성현, 김순남, 김지경, 박선옥, 전경원, 민병철 (2010).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황혜신 (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Barnett, W. S., & Belfield, C. R. (2006).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social mobility. *The Future of Children: Opportunity in America*, 16(2), 73-98.
- Borman, G. D., & Hewes, G. M. (2002). The long-term effects and cost-effectiveness of success for all.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4(4), 243-266.
- Carneiro, P., Cunha, F., & Heckman, J. J. (2003).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family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Economics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Lessons for Economic Policy”,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Minneapolis, MN, October 17.
- Cunha, F., & J. J. Heckman. (2006). Investing in our young peop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Economics.
- Grunewald, R., & Rolnick, A. (2007). A productive investment: early child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From measurement to action. a priority for growth and equity, 17-32.
- Heckman, J. J., & Masterov, D. V. (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29(3), 446-49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extra expenses incurred by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mpted by the problem that th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is not showing enough signs of being mitigated, despite increased child-car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4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analysis of the study shows that 68.5% of the surveyed children were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averag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y took part in was 2.9. The average extracurricular expenditure was 50,000 won.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find that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children participated in and the expenditure the households spent on them varied by area. Variables were inserted in a gradual manner in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s' expenditure on children's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st the variables used, the education level of the mother,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mother, the type of the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 and the household's place of residence featured prominently, with the place-of-residence factor accounting for most of the reason why a household spent the amount it did. The outcome of the study bears four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specific evaluation of the contents and cos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such activities.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de a specific criteria of necessary expense. Third, throughout the child support agency, the courses and costs of special activities should be monitored regularly. Fourth, there should be extracurricular activity suppor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Key Words* :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childcare facilities, child care expen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penses*

논문투고	2014. 04. 11.
수정원고접수	2014. 09. 30.
최종게재결정	2014. 10. 05.